

바꾸면 좋은 상표가 보인다

자신능력이 열약하며 상표권리(브랜드 개발)에 관하여 식견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자들은 간단하게 접근하여 자기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임의선택표장에 눈을 돌려라.

상표란 상표법 정의상 상품을 생산·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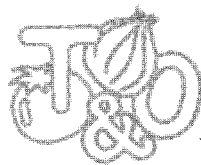
곧 상표란 상품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서 상품의 제조업 또는 유통업등을 하는 자가 상품 거래 사회에서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호·문자·도형 등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여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상품표지(symbol)를 말한다.

그러나 자기의 업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화된 상품 표시 즉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서의 브랜드 개발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상표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 상품을 보통으로 표시하거나 관용적 상표, 직접적인 성질표장(기술적 표장),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의 식별력 없는 표장과 비록 식별력은 있으나 상표 부등록 요건에 해당되는 국기,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과 유사한 상표 및 이들의 허위 표시와 모욕우려 상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박람회 표장,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 주지저명 상표, 부정목적의 출원, 입체상표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는 그 형성과정에 따라 보통명칭 표장(generic mark),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 간접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암시 표장(suggestive mark), 임의선택 표장(arbitrary mark)과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조어 표장(fanciful or coined mark)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명칭·기술적 표장 등은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암시 표장은 법원의 판례 경향이나 사안별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논리나 객관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출원인이 출원 등록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며, 조어표장도 시대적 감각에 맞는 독창성을 겸비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 등에



서 브랜드 관리 전략으로 상품의 고품질과 홍보력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에 힘들다. 그러므로 자산능력이 열악하며, 브랜드 개발에 관하여 식견이 부족한 대다수의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자가 고유브랜드로써 자기의 등록상표를 확보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굳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깨고 일상의 사회 현실에서 접하고 있는 사실들을 자기의 상품·서비스업에 화체시키는 것 즉, 일상의 사회현상을 발견·선택하는 임의 선택 표장에 눈을 돌려 어떻게 자기의 권리로 설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위의 모든 事象을 유심히 살펴보면 꽃이름, 나무 이름, 식물명(일년초, 다년초), 과일·열매이름, 동물명(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벌레명, 동물알 이름)의 동식물의 이름과 금성·오리온좌·블랙홀 등의 별자리·별이름·천체의 이름, 연극·창극·영화·만화 등의 제목·대본중 일부·주인공 이름과 우화·전래동화·속담말과 노래제목 및 그의 가사 등 무궁무진한 사회 현상에서 자신의 상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연극·영화·만화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역할(배역)등의 상품화된 캐릭터(character)는 일종의 아이디어 이지만 원저작물과의 저작권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도 지정상품·서비스업을 보통으로 지칭하는 표장이나 직접적인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은 피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타간에 지정상품도 달라야 하겠지만 가급적 타인이 쓰지 않는 참신한 표장이 자타 식별력에 있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하여 주위의 소재가 자기의 상품화 전략(아이템)에 맞아 떨어지는 임의 선택표장이 결정

되면 쓰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류에서 검색(문자, 도형, 이들의 결합 등)후, 이것을 원형대로 쓰거나 원형에 앞뒤말을 가감 또는 도형·의인화, 변형 및 영어 등의 외국어 표기를 병기함으로써 유사 범위를 조금이라도 회피하여 출원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식물 이름 및 그의 변형 상표등록건수 예시〉

1. 동식물명

진달래(15), 코스모스(54), 소나무(8), 수양버들, 민들레(24), 산딸기(6), 토마토(19), 양파(14), 대추(27), 호랑이(41), 독수리(83), 카멜레온(27), 상어(28), 잠자리(33)

2. 별자리·별이름, 천체

SUN(1000건 이상), 오리온·금성·MOON(300건 이상), 반달(51), 북두칠성(9), 명왕성(3), 천왕성(2), 초생달(1), 블랙홀(12)

3. 연극·영화 등의 제목·주인공 등

홍길동(27), 논개(26), 심청(8), 선녀와 나무꾼(10), 서편제(3), 이수일과 심순애(1)

4. 노래제목 및 그의 가사

사랑 포함말(1000건 이상), 바위섬(2), 개여울(1), 꽃중의 꽃(1), 고향의 봄(2), 꿈에서 본 고향(2), 파도소리(2), 무시로(4)

[출원전의 선행상표 및 분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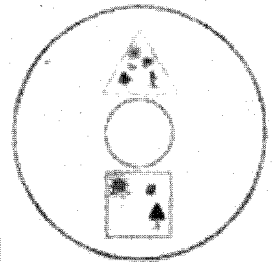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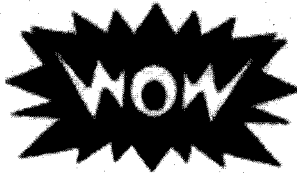
박씨네수어탕



대성技術交易 Kim Satgat



봉성기역



태백굴김지



저옥산 불가야 제형실



1. 선행상표의 조사

(1) 선행상표조사 필요성

상표를 채택해서 자기업무에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전에,

- ① 우선 그 상표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 관용되고 있는 상표 또는 상품의 원자재, 품질, 산지, 판매지를 표시하는 것, 또

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 장소, 질, 제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을 표시하는 것, 그 외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 ② 다음에 그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외관, 칭호, 관념 등의 관점으로부터 혼동하기 쉬운 상표)가 아닌 것의 선행상표 조사 및
- ③ 국내 또는 외국의 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아닌 것의 조사 등을 하여 확인할 것을 권한다.

비록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그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출원중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성이 높고 동시에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출원을 위해 든 경비, 노력은 완전히 쓸모없게 된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행상표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상표의 조사방법

선행상표의 조사

- ① 우선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상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떤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에 속하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조사방법은 「2. 분류의 조사」참조
- ② 다음으로 그 상품·서비스의 구분에 해당하는 선행상표 중에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외견상 또는 발음상에서 공통이거나 또는 유사한 것 그리고 관념에서 혼동되는 유사 상표가 없는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 ※ 또 선행상표에는 2종류가 있는데, 이미 특허청의 상표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와, 현재 출원중이기 때문에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표(선출원 상표)가 있으므로 그 양쪽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2. 분류의 조사

- 1)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야 하지만, 그 지정은 상표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제1류~제42류)에 따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절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을 출원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란에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같이 기재 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상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에 속하는가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 2(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또는 「유사상표·서비스 심사기준(특허청 예규)」에서 예시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형태의 것을 조사한다.

3) 유사판단 기준(참고)

- ① 상품과 서비스업
 - 서비스업과 상품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 서비스와 상품의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
 - 서비스와 상품의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
 - 서비스의 제공장소와 상품의 판매장소가 일치하는 경우
 - 수요자 범위가 일치하는 경우
- ② 서비스업간
 - 제공의 수단·목적 또는 장소가 일치하는 경우
 -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 경우
 -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 경우

- 업종이 동일한 경우
- 규제법률이 동일한 경우
 - ※ 결국, 출처의 혼동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
- ③ 각 유사군코드에 의한 상품·서비스업 세목은 유사범위로 봄. 단, S0501(수선업), S1001(특수가공업), S1209(학원경영업), S1211(상품판매대행, 상품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S1217(기타)는 제외
- ④ 0501(수선업), S1001(특수가공업), S1211(상품판매대행, 상품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은 수선·가공대상 상품이나 판매중개대상 상품과의 유사범위 확인
- 수선업과 특수가공업의 서비스세목의 유사범위는 그 수선 및 특수가공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사범위를 참작하여 유사범위 판단
 - ex) - 상품인 섬유기계기구와 농축산용기계기구는 비유사하므로 서비스업인 섬유기계기구수선업과 농축산용기계기구수선업은 이종
 - 상품인 선박용동력기계기구와 항공기용동력기계기구는 유사하므로 서비스업인 선박수리업과 항공기수리업은 동종
- 판매대행·알선 및 상품중개업인 경우 서비스업의 대상인 상품이 그상품류에 해당군(군단위기준)에 속하는 상품과 유사할 때만을 유사범위로 봄
 - ex) - 지정서비스업이 아동복판매대행업일 경우 상품류 25류 4군의(2504 : G4501)양복속에 아동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5류 4군의상품과만 유사여부 판단
- ⑤ S1209(학원경영업)은 교육훈련 목적에 따

라 유사범위 판단

- ⑥ 표장명칭에 상품명에 포함되어 있거나, 지정서비스업이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상품과의 유사범위 확인
- ※ 검색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성이 있는 상품류의 군을 의미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2001. 7. 1부터는 물품의 일부분의 디자인도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의장법에서는 컵의 손잡이, 전화기의 버튼부분, 주전자의 토출구, 손가락의 손잡이 등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미적 창작도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의장법에서는 컵의 전체형태, 전화기의 전체형태, 주전자의 전체형태 등 물품 전체의 형태에 관한 디자인만을 의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독창적인 디자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또한, 현행 의장법에서는 등록의장과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의장을 정당한 권한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되므로 등록의장의 부분의장을 도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침해는 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등록된 타인의 의장중 일부분의 의장을 도용하되 전체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단실시 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 그러나 부분의장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7월 1일부터는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은 의장을 타인이 전체의장의 일부의장으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 따라서 앞으로는 부분의장을 도용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분의장에 대한 창작 활동도 활발하여 디자인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2001년 7월 1일부터 다수 물품의 집합을 통하여 통합적 미감을 창출하는 시스템의장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현행의 한 벌 물품 의장제도에서는 한 벌의 직연용구 세트 등 6개의 한벌 물품에 한하여 이에 관한 세트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사회의 발전과 산업사회의 다양화로 다수 탄생되고 있는 시스템의장(예: 키친(Kitchen)시스템, 오디오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의장법 개정을 통하여 시스템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한 벌 물품의 대상을 6개에서 31개로 확대하여 통합적 디자인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 다만, 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것은 의장법의 개정으로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도입됨으로써 물품의 전체의장과 부분의장(예: 컵의 전체의장과 손잡이 만의 의장)을 모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와 한 벌 물품의 전체의장과 각 구성물품의 의장(예: 한 벌의 오디오 세트의 전체의장과 구성물품인 스피커, 앰프, 튜너 등의 의장)을 모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의장이나 구성물품 의장을 전체의장이나 한 벌 물품 의장의 출원보다 먼

저 출원하든지 동일자(同日字)로 출원하여야 모두 등록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약 부분의장이나 구성물품 의장의 출원일이 전체의장이나 한 벌 물품 의장의 출원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부분의장이나 구성물품 의장의 출원은 거절된다.

† 한벌 물품의 목록 및 각 구성물품(2001. 7. 1 시행)

한벌 물품명	구성 물품	적합성	중분류
1 한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 버선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BI-10
2 한벌의 남성용 한복 세트	저고리 바지 마고자 두루마기 버선 대님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BI-10
3 한벌의 여성용 속옷 세트	브래지어 팬티 거들 슬립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BI-60
4 한벌의 장신구 세트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B3-00
5 한벌의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 핀	넥타이 핀 커프스버튼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B3-00
6 한벌의 직연용구 세트	탁상용 라이터 재떨이 담배함 반침대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B6-6
7 한벌의 침장 세트	이불 요 베개 메트리스커버 패드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CI-10

한 벌 물품 명	구성 물품	적합성	중분류
8 한 벌의 커피 세트	커피잔 및 받침접시 커피주전자 프림따르개 커피통 설탕통 프림통 통받침대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C5-10
9 한 벌의 화채용 세트	화채볼 화채볼컵 화채주걱 화채주전자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C5-10
10 한 벌의 반상기	밥그릇 대접 탕기 초치 보시기 종지 쟁첩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C5-10
11 한 벌의 다기 세트	차주전자 수우 차잔 및 받침접시 가능	받침접시가 없는 경우도	C5-10
12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간장통 소금통 후추통 소스통 통받침대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C5-10
13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밥그릇 국그릇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C5-10
14 한 벌의 주기 세트	술병 술주전자 술잔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C5-0
15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스푼 나이프 포크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C6-10
16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C6-10
17 한 벌의 제기 세트	항로 지방틀 촛대 편틀 어틀 술잔 잔대 제사용 그릇 밥그릇 국그릇	5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C7-10

한 벌 물품 명	구성 물품	적합성	중분류
18 한 벌의 세면화장대 세트	세면화장대 화장거울 수납장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D0-0
19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	책상 책꽂이 서랍통	2종 이상의 구성물품을 포함할 것	D2-30
20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거실용 수납장 장식장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D2-50
21 한 벌의 테이블 세트	테이블(2개 이상)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D2-00
22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사무용 테이블 파티션 서랍통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D2-00
23 한 벌의 응접 세트	응접탁자 쇼파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D2-00
24 한 벌의 탁자와 의자	탁자 의자(2개 이상)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D2-00
25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싱크대 조리대 가스렌지대 수납선반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D5-10
26 한 벌의 서도용구 세트	먹 벼루 연적 벼루함	벼루함이 없는 경우도 가능	F0-0
27 한 벌의 필기구 세트	샤프펜슬 볼펜 만년필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F2-10
28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튜너 앰프 데크 스피커 이퀄라이저 장식장	장식장이 없는 경우도 가능	H0-0
29 한 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PC 본체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PC형 카메라	마우스 또는 PC형 카메라 마우스 및 PC형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가능	H0-0
30 한 벌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받침대	텔레비전수상기 받침대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H4-30
31 한 벌의 문짜과 문설주	문짜 문설주	모든 물품을 포함할 것	L3-50

※ 개정 의장법 주요내용(2001. 7. 1 시행)

1. 부분의장제도의 도입

- 물품의 부분의 의장에 대한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고 부분의장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의 부분의 의장을 보호하도록 함(제2조제1호)

2. 한 별의 물품의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의 완화

- 사회의 거래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한 별의 물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은 구성물품의 동종여부에 상관없이 한 별의 물품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구성물품에 대한 의장권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실제적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한 별의 물품의 의장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고 한 별의 물품의 의장의 등록요건 완화를 통하여 시스템의장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구성물품에 대한 등록요건을 폐지함(제12조제1항)

3.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 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현행 심사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 부실권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장의 성립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부등록사유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함 (제26조제2항)

4. 일반국민의 정보제공대상 및 정보제공이유의 확대

- 일반국민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심사관의 심사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하여 출원공개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정보제공사유도 거절이유 전체로 확대함(제23조의5)

5.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여제도 도입

- 부분의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분의장을 포함하고 있는 선출원의장에 대하여 후출원된 부분의장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일반적인 선출원주의 적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확대된 선출원지위 부여제도를 채택함(제5조제3항)

6. 기능성의장의보호 제외

- 출원된 의장이 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도 된 의장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므로 의장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제6조제4호)

7. 다의장등록출원의 용어 변경

- 현행 “다의장등록출원”의 용어는 1의장1출원원칙을 위반한 출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용어를 “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함(제9조제4항 등)

8. 출원의 변경에 따른 원출원의 취하 간주 규정 삭제

- 출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출원의 취하 간주규정에 의하여 신규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에 따른 심사처리의 지연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하 간주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4항 삭제)

9.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의 심사강화

-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사의장등록출원인이 기본의장의 의장권자와 다른 경우와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이 기본의장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5호)

10. 의장무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간의 확대

- 의장무심사등록의장에 대한 일반공중의 심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무효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 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로 확대함(제29조의2제1항)

11.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요령의 개선

- 출원된 의장의 신규성·창작성 판단의 원활화와 등록후 권리분쟁의 최소화를 위하여 출원인이 창작내용의 요점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내용은 권리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제43조)

12.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의 실시권자의 과실 추정

-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의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가 다른 사람의 의장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과실이 추정됨을 명문화함(제65조제2항)

13.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청구인의 범위 확대

-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다른 사람의 등록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장권에 저촉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의장권자는 선등록의장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청구가 가능함을 명문화 함(제70조제1항)

14. 복수의장등록에 대한 등록료 납부할 때 의의장별 포기

- 복수의장등록에 대한 의장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할 때 의장별로 포기가 가능하도록 함(제31조의2)

15. 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회복

-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료 추납기간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출원이 포기되거나 의장권이 포기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면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봄(제33조의2제1항·제2항)
- 효력제한기간(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타인이 그 의장 또는 그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동

기간중 선의의 실시 및 실시 준비자에게는 유상의 법정실시권을 부여함(제33조의2제3항내지제5항).

16.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신설

-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침해물품의 판매수량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신설(제64조제1항)
- 법원은 침해와 관련이 있는 소송에 있어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에 위한 사실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64조제5항)

17. 의장권 침해자 등의 처벌강화

-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죄(제82조제1항)
 - 현행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증죄 처벌강화(제83조제1항)
 - 현행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위행위의 죄 처벌강화(제85조)
 - 현행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 침해행위자 이외의 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 (제87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 허위표시죄 또는 사위행위죄를 범한 경우 행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처벌강화
 - 현행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 침해죄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표시죄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위행위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 법인
 - 침해죄 : 3억원 이하의 벌금
 - 허위표시죄 · 사위행위죄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 개인
 - 침해죄 : 1억원 이하의 벌금
 - 허위표시죄 · 사위행위죄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비슷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자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상품에 대한 특허나 상표를 등록하는 바람이 불고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인터넷 등으로 기업의 대금 결제를 가능케 하는 '채권양도시스템'을 개발, 특허를 출원한 후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맺어 가동하기 시작했다.

외환은행은 또 외환 거래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동화 서비스인 '원샷 기업전용 외환서비스'를 전산 개발해 특허출원 신청을 냈다.

삼성캐피탈도 작년말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은행 현금카드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쓸 수 있는 대출 전용 카드인 '아하론 패스'라는 상품을 내놓은 다음 경쟁사가 모방한 상품을 내놓자 상표 등록을 최근 신청했다.

한미은행은 최근 고객이 자주쓰는 거래 기능을

콜 센터에 등록해 손쉽게 활용할수 있게 한 비즈니스 모델인 '마이메뉴 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한미은행은 이 서비스 외에 폰뱅킹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8개에 대해 특허 및실용신안 등록을 추진중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사이버론 시스템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말 기업 대금결제관리시스템 등 지난 1년간 모두 12건의 특허를 내놓은 상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아이디어를 짜내 특화된 상품을 내놓지만 경쟁 은행이 비슷한 개념의 상품을 빼껴 내놓고 있다"면서 "특허 출원이나 상표 등록을 추진,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덕밸리 로고 제작 상표출원 특점 사용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덕밸리의 로고가 제작돼 상표 출원된다.

대전시는 '대덕밸리'가 벤처산업과 관련없는 업종 등에서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기로 하고 최근 이에 필요한 로고의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안에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한 뒤 2002년 3월 상표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 제작한 로고는 '대덕밸리'의 연구개발 결과물이 세계에서 으뜸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 이 로고를 지역경제 및 과학진흥 분야는 물론 국제교류, 통산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 경향신문

보안업계, 특허 출원 "바람"

보안업계에 특허 출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안기술이 급진전하면서 신생 벤처업체들이 새로운 특허 기술을 앞세워 보안시장에 진입하는가 하면 기존 업체들은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마련을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앞세운 보안특허를 개발,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로 특허를 출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안업체들은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해왔으나 점차 시장경쟁이 가열되면서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허가 가장 유리한 수단이라고 판단, 앞으로 보안업계의 특허출원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초 보안시장 뛰어난 세보아(www.sevoi.net 대표 정현우)는 침입탐지시스템 관련 요소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100Mbps 랜에서 유통되는 패킷을 100% 수집하여 연동된 침입탐지시스템에 부하를 적절히 분산하여 전달함으로써, 침입탐지시스템의 침입탐지 성능을 개선시켜준다.

현재까지 출시된 소프트웨어기반의 침입탐지 시스템들은 패킷 크기가 작을수록 그 수집 성능이 떨어져 네트워크 보안 유지에 취약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기술로 구현된 엔진이 침입탐지시스템과 연동될 경우에는 모든 패킷의 수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하분산 기능을 통해 분산 처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시큐아이닷컴(www.secui.com 대표 오경수)은 '다단계 테이블방식을 이용한 고속 패킷 필터링'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일반적으로 파이어월을 설치하면,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구현된 보안 제품은 설정된 접근 제어 규칙에 상관없이 트래픽 처리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안컨설팅업체인 A3시큐리티(www.a3sc.

co.kr 대표 김휘강)는 로그분석 제품인 A3오트와치에 구현된 기술을 최근 특허 출원했다.

일반적인 로그분석 시스템의 경우, 매일 쌓이는 로그 파일들로 인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로그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A3시큐리티가 개발한 로그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 속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 시큐브(www.secube.com 대표 홍기웅)가 파일시스템 해킹방지방 보안 커널 방법과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등 세가지 기술을 특허 출원했으며, 퓨처시스템 및 세넥스테크놀로지도 각각 가상사설망 칩 기술과 PC 보안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바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발특2001/9

원고모집안내

[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 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4 ~ 6 매(A4)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 : E-mail : pid@kipa.org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업부 TEL(02)557 - 1077 (교)306